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12. 17(수)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4. 12. 09.

나. 제안자 : 허 준 의원

다. 회부일자 : 2014. 12. 09.

라. 상정일자 : 2014. 12. 17.(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허 준 의원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4조)

-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내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토록 노력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과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지원 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등 지원 위원회” 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순직 소방공무원등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0조)
-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 나가고,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둠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제정 조례안은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2011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동일 제명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010-9호)」 를 제정하였지만 “위로금 지급” 조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방자

치단체의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 사항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실효된 상황임.

- 이후, 2014년 6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2014년 12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으며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제정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소방공무원 유족,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지원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녀장학금, 단체보험, 취·창업 우대 등 지원방안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다만,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효된 기존의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010-9호)」는 본 제정 조례안과 제명이 동일하고 내용이 유사하므로 부칙에 폐지하는 규정을 두어 업무에 혼선을 방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이영훈 위원 >

-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효된 기존의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맞는가?
→ 폐지가 맞음. 입법되어 특별위로금 지급 사항은 법에 규정 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차준택, 허 준, 신영은, 이영훈, 이용범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5명, 찬성 : 5명, 반대 : 0명)

❖ 수정가결 내용

○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010-9호)는 폐지한다.” 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010-9호)는 폐지한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 ~ 제12조 < 생 략 ></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제1조 ~ 제12조 <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u>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u>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5010-9호)는 폐지한다.</u></p>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게 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제5조(책무)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내 의료기관중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
3. 부상 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
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으로 소방안전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 규모, 신청 등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보험 지원) ① 시장은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취·창업 우대 등) 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5010-9호)는 폐지한다.